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 등 추가 등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96호)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79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4
1.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추가(김재섭의원안)	4
2.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간소화(허영의원안)	9

I. 개요

1.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7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7. 29.
- (3) 회 부 일 : 2025. 7.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2.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9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8. 5.
-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Ⅱ. 검토 의견

1.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추가

(김재섭의원안 제38조제1항제6호 신설)

□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u>
	<u>등의 지원</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 신체 및 정신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생활, 사회적 관계, 경제적 문제, 교육 및 학습, 취업 및 창업 등, 법률 및 권익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전담기관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 중 법률 및 권익 보장 영역에서는 사례관리비(월 40만원)로 법률상담비,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4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중 법률·권익보장 서비스* 제공 현황(전국)>

(단위: 명, 만원)

구분	합 계	24.1분기	24.2분기	24.3분기	24.4분기
건수**	211	28	59	70	54
집행액	1,985	40	811	477	657

* 예산(사례관리비 등 지원)·비예산(서비스 연계) 지원항목의 총합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지원사업을 통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¹⁾)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²⁾하여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구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위탁부모, 후견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위 사업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관련 문의 대응 및 추천자 서류 검토, 소송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친권 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소송 지원을 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지원 건수 296건 중 266건이 종결되었고, 종결된 266건 중 인용은 237건, 자진 취소 14건 및 기각은 15건으로 나타남.

1)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2)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현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수행함.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지원 결과 현황>

(2025년 1월 기준, 단위: 건)

구분	지원 사례	법률지원 사례 구분				소송 및 심판 청구 결과					
		친권상 실질 미성년 후견인 선임	미성년 후견인 선임	성변경	기타	인용			자 취 소	기 각	진 행 중
						계	당 해 인 용	이 월 인 용			
계	296	181	73	36	6	237	95	142	14	15	30
2024	60	32	14	14	-	31	31	-	3	1	25
2023	59	36	14	9	-	47	21	26	6	2	4
2022	44	28	8	6	2*	39	12	27	1	3	1
2021	48	35	7	5	1*	44	11	33	-	4	-
2020	36	23	11	2	-	32	9	23	-	4	-
2019	20	10	8	-	2*	18	4	14	2	-	-
2018	17	6	10	-	1*	17	3	14	-	-	-
2017	6	5	1	-	-	5	1	4	1	-	-
2016	6	6	-	-	-	4	3	1	1	1	-

* 미성년후견인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재 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각각 수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합하여,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자립준비청년의 법률 수요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초기 자립 시 겪을 수 있는 민·형사 등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자립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제3항³⁾에서는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제38조제1항제1호)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미 후견인 선임, 활동 지원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사안을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법률 수요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개별 지원의 적절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23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3)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간소화 (허영의원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⁴⁾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u> <u>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u>1. 제1항제8호의 유치원</u> <u>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u> <u>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u> ----- ----- -----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 ----- ----- -----.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⁵⁾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자등의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력 조회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개정안에 따른 변경 사항>

현행	개정 시행 후
①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요청 ② 취업자 등이 기관장에게 전력 조회 회신서 직접 제출	①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요청 ② 취업자 등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전력 조회 회신서 직접 제출 ③ <u>교육감·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요청</u>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5)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특히, 최근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각 아동관련기관(교육기관)의 장의 행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 12. 27.)으로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8호 및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 4. 11.)되어 시행(2023. 10. 12.) 중에 있고⁶⁾, 유사한 취지로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제2202090호,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제2203743호)이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도 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학교 등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예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관계 부처 등 의견>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예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
교육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여야 하나, 학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각종 교육활동과 학교 인력 채용이 많은 학기 초에 학교 업무 부담이 과다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은 조회할 수 없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여 학교 현장에서 지속 요구한 사항임. 따라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인력 채용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 고등·특수학교(155교)는 시교육청에서, 전 유·초·중학교(유 352원, 초 304교, 중 171개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각 1인이 업무처리 예정으로 업무 과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에 따라 학교 업무 경감 및 법 개정 효과가 유지될 것이므로 개정 불필요

문 의 처

02)6788-5500